

研究報告書
第65輯(2012. 3)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 國 租 稅 研 究 所

◆ 研究責任者 ◆

김 완 석 (서울시립대 교수)

전 병 욱 (서울시립대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의 효과	8

제2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분석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분석	9
1.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개요	9
2.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현황	14
제2절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20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과 관련한 분석	20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외부성과 관련한 분석	23
제3절 연구설계	25

제3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

제1절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분석	28
제2절 설문조사의 결과 및 해석	31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 (설문항목 Q1)	31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신뢰성 (설문항목 Q2)	32
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3)	33
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4)	35

5.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9)	38
6.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11)	43
7.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설문항목 Q13)	45
8. 설문조사의 소결론	49
 제4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0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50
1.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분석	50
2. 조세감면의 정도의 분석	54
제2절 연구표본의 수집	59
제3절 연구모형	63
제4절 실증분석의 결과	66
1.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66
2. 단일변량분석	68
3. 회귀분석의 결과	69
4. 실증분석의 소결론	74
 제5장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75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의 강화	75
제2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	77
1.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및 확대	77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한시적 세액공제	79

3.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유리한 적용	81
4. 세무사회의 외부세무조정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83
제6장 요약 및 결론.....	86
☐참고문헌☐	89
〈부 록〉 설 문 지.....	91

표 · 그림 목차

〈별표 1-1〉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	4
〈별표 2-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9
〈별표 2-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	10
〈별표 2-3〉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11
〈별표 2-4〉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 (2010-2011년)	12
〈별표 2-5〉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 (2007-2009년)	13
〈별표 2-6〉 외부조정대상법인	13
〈별표 2-7〉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4
〈별표 2-8〉 사업자 유형별 평균금액의 비교	15
〈별표 2-9〉 사업자 유형별 비율차이의 비교	16
〈별표 2-10〉 세무조정 유형별 (당기순이익÷매출액) 비율의 비교 ..	18
〈별표 2-11〉 공공재의 특성	20
〈별표 3-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29
〈별표 3-2〉 국세공무원 구성비율 (2010년 국세통계연보)	30
〈별표 3-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40
〈별표 3-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	42
〈별표 3-5〉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44
〈별표 3-6〉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46

〈별표 3-7〉 “기타”의 구체적인 답변 (중복 제외)	49
〈별표 4-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연도별 세무조사 비율	52
〈별표 4-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구조	55
〈별표 4-3〉 최저한세를 반영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	57
〈별표 4-4〉 성실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법인사업자의 경우의 예시)	60
〈별표 4-5〉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62
〈별표 4-6〉 연구표본의 수집기준	62
〈별표 4-7〉 변수의 기술통계	66
〈별표 4-8〉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68
〈별표 4-9〉 외부세무조정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69
〈별표 4-10〉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결정요인	70
〈별표 4-11〉 조세감면의 정도의 결정요인	72
〈별표 5-1〉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 보고와 조성훈(2008)의 비판 및 동(同) 비판에 대한 본 연구 등의 분석	76
〈별표 5-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81
〈별표 5-3〉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의 유형	82
〈별표 5-4〉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비율	85
〈그림 2-1〉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생산수준	22
〈그림 2-2〉 외부경제를 고려한 외부세무조정의 적정생산량	25
〈그림 3-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	31
〈그림 3-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신뢰성	33

〈그림 3-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	34
〈그림 3-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35
〈그림 3-5〉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자기세무조정 의 경우와의 비교	37
〈그림 3-6〉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세무사의 사전적 개입 가능성	38
〈그림 3-7〉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39
〈그림 3-8〉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	41
〈그림 3-9〉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44
〈그림 3-10〉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45
〈그림 3-11〉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47
〈그림 3-12〉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	48
〈그림 4-1〉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평균적인 법인세감면의 적극성	58
〈그림 5-1〉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세액공제를 통한 기대효과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사회적 최적수준 생산)	80

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년 6월 23일자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¹⁾ 행정입법 검토제도에 따라 국회 규정인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²⁾ 제650호에서 제시하는 7가지의 기준에³⁾ ‘조세법률주의의 위반 여부’를 추가한 기준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의 ‘강제 세무조정 제도(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6억원, 3억원 또는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검토했다.⁴⁾

1)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 등의 제출)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2) 국회 규정 제650호, 2009. 9. 16.

3) 1.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여부 2.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3. 포괄적 채위임 여부 4.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행정입법 정비 여부 5. 상·하위법령 간 체계의 부적절 여부 6. 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결여 여부 7. 그 밖에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동(同) 검토보고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강제 세무조정 제도의 위헌성’과 함께 ‘증여세 공제대상 법률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 적격분할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관세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관세사 등의 장부보관의무’ (관세사법 시행령 제151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 법률화’ (농어촌특별세법

동(同) 검토보고는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로 기록된 장부로부터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구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절차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맞추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내부적인 세금계산행위”인데 우리 세법은 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자신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할지,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할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同) 검토보고는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사실상 세금 신고납부행위라고 볼 수 있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강제 세무조정 제도는 전혀 법률의 근거 없이 단지 행정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59조의⁵⁾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세무사 선임료 등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행령 제4조)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제시하였고, 대통령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작성’(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제출양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제시하였다. 동(同) 검토보고는 전자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입법’ 10건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소위에 회부하여 개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후자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등’ 4건은 국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5)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또한, 동(同) 검토보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⁶⁾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2011년 5월 2일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⁷⁾ 도입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⁸⁾ 같이 강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6. (생략)

7)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 5. 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2011. 5. 2. 신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 5. 2. 신설).

부칙 (2011. 5. 2. 법률 제10625호) 제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8) 정부가 2010. 10. 1.자로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 11. 15.자에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조세소위원회는 동(同) 법률안을 심사한 후 2011. 3. 4.자 제298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 중 이미 법률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고, 2011. 3. 7.자 제3차 기획재

4 제1장 연구의 배경

제 세무조정 제도의 도입여부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되, 동(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에 근거한 신고납부제도, 납세협력비용 부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국세청의 조성훈 서기관은 2008년 9월 「국세」지에 기고한 “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의 위헌성 검토”에서 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는 단순히 세무대리인의 수입확보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고,

정위원회도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1. 4. 4.자로 제안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1411)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

- 가. 개정안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준세무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동 제도를 세무사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급자 위주의 현 세무대리시장 여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움.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고유 업무임에도 특종 또는 수입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탈세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패널티 제도는 세무행정을 선진화하여 탈세를 줄이겠다는 세무행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권한이고, 개정안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인인 세무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함.
- 다. 가장대리 등 동일한 세무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그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라.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어떤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다른 사업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어떤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를 변호사로부터 감수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적절치 않음.

동(同) 제도가 신고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적, 실증적 근거도 없고, 세무대리인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고객확보를 위해 부실신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납세자도 외부 세무조정의 추가적 비용을 고려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를 원할 수도 있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스스로 이행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부당한 지출을 강요하는 것은 납세자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이므로, 외부 세무조정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비판적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가 존치되고 있지만, 동(同)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논의는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후에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동(同)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범위를 다소 넓게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적이다.

김윤희와 최숙(2009) 및 이강오와 명영준(2009)은 전술한 조성훈(2008)에 대응하여 다양한 법령상 논의를 통해 외부 세무조정 제도의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윤희와 최숙(2009)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헌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관련 법률의 위임규정을 연혁

적·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예측가능성이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동(同) 제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는 할 수 없고 ② 동(同)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③ 동(同) 제도는 결국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④ 동(同) 제도를 통해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관련 법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강오와 명영준(2009)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① 동(同) 제도는 공권력단체와 국민간의 공법적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외부세무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② 기업회계의 투명성보다 더욱 공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세무조정을 통한 사전검증절차로 동(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③ 동(同) 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고 세무조사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심태섭(1999)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심태섭(1999)은 동

9) 명영준과 이강오(2009)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① 세법상 외부조정대상자의 범위를 범령화해야 하고 ② 회계 감사와 세무조정은 별개로 수행되어야 하며 ③ 외부조정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同)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저렴한 조정료”, “세무사 사무실의 청결함”, “납부세액의 정확한 산출”, “각종 신고/업무기일의 준수” 및 “납세자 요구의 충분한 이해”라고 제시하였다.

임인환(2002)은 기업특성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항목의 차이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인환(2002)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대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결과 관련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보다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결과 세무조정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조세법 규정이 기업의 회계실무에서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홍정화와 이미영(2009)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서비스 원가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홍정화와 이미영(2009)은 ① 세무사들은 투입하는 서비스시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거래처에 부실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처의 업종, 기업형태, 세무조사위험, 세무사의 명성 및 사무소의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 원가가 할증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②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건비, 종업원수 및 개업연수인 반면 국세청 근무경력이나 사무소 운영형태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③ 세무대리서비스의 합리적인 보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업종, 기업형태, 지점 존재 여부, 세무조사위험 및 세무사의 명성 등과 같은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논의까지 취급한 선행연구는 발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방법은 동(同) 제도와 관련한 현행 및 연혁법령 등의 분석을 통한 제도적 연구, 동(同)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연구 및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와 계량경제학적 분석인데, 개별적인 연구방법과 결과는 목차에 따라 후술하기로 한다.

제3절 연구의 효과

본 연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계속 제기된 동(同) 제도의 충분하지 못한 경제적 효과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동(同)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충분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음으로써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세무조정서비스가 충분한 제도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증가시켜서 국가의 경쟁력(competitiveness)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분석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분석

1.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개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¹⁰⁾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¹¹⁾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¹²⁾¹³⁾ 동법 제70조 제4항은 종합소

10)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 및 별지 제40호 서식(1).

12) 다만, <별표 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별표 2-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 ②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④ 퇴직소득만 있는 자*A
- ⑤ ①+④, ②+④ 또는 ③+④*B*C
- ⑥ 분리과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만 있는 자
- ⑦ ①+⑥, ②+⑥, ③+⑥, ④+⑥ 또는 ⑤+⑥
- ⑧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자

*A ①-④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 면제

*B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①·②·③과 조합 가능(①·②·③ 간의 조합은 누진과세 때문에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당)

*C ①-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13) 이와 함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별표 2-2>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되, 복식부기의무자가¹⁴⁾ ③의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별표 2-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

- 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 ③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¹⁵⁾¹⁶⁾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서¹⁷⁾ 간편장부에 따른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¹⁸⁾
- ④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등을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 ⑤ 사업자(소규모 사업자는¹⁹⁾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채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외의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 ⑥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동(同) 기간 中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동 조 제4항).

- 14)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 16)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17)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별표 2-3>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별표 2-2〉의 ③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²⁰⁾ 정하는 〈별표 2-4〉의 사업자는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무

(단,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나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

〈별표 2-3〉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업종	수입금액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 위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하고, 이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18)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19) “소규모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신규사업자 또는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4항 및 제132조 제4항).

2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1항.

방하지만 <별표 2-4>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별표 2-4>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
(2010-2011년)**

업종	수입금액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000만원

* 위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하고, 이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별표 2-4>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은 2010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2009년까지는 <별표 2-3>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업종 구분도 <별표 2-4>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2007년 이후의 동(同) 기준을 정리하면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
(2007-2009년)

업종	수입금액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²¹⁾	7,500만원

이상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구분은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별표 2-6〉과 같이 외부조정대상법인을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8항).

〈별표 2-6〉 외부조정대상법인²²⁾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 법인
-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거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 ③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④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 ⑥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⑦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⑧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21) 2007년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2)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제외한다.

2.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현황

2007년 이후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매 과세기간별로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별표 2-7>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별표 2-7〉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외부조정		자기조정		기타*		합계	
2007년	709,508	24.5%	98,637	3.4%	2,092,113	72.1%	2,900,258	100.0%
2008년	786,486	23.2%	109,541	3.2%	2,496,916	73.6%	3,392,943	100.0%
2009년	818,621	24.5%	115,376	3.5%	2,402,304	72.0%	3,336,301	100.0%
2010년	874,057	24.8%	122,382	3.5%	2,533,106	71.8%	3,529,545	100.0%
평균	797,168	24.2%	111,484	3.4%	2,381,110	72.4%	3,289,762	100.0%

* 성실납세방식 신고자,²³⁾ 간편장부신고자, 기준경비율신고자²⁴⁾ 및 단순경비율신고자

<별표 2-7>과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매 과세기간별로 전체 개인사업자 중에서 23% 내지 24% 수준을 차지하는데, 이를 다시 외부조정 대상사업자와 그 밖의 사업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구조에 따른 사업자 유형별 평균금액을 정리하면 <별표 2-8>과 같다.

23)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간편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성실중소기업은 일반납세방식 대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수입금액 요건)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투명성 요건) 하고(단, 수입금액 요건과 투명성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나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동(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활동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금부담 그 자체보다 더욱 크게 느끼는 세금신고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즉,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4)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는 추계의 방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업종별로 2,400만

〈별표 2-8〉 사업자 유형별 평균금액의 비교

(단위: 천원)		외부조정	자기조정	노외부조정 (자기+기타)	전체사업자
2007년	총수입금액	549,546	252,753	83,003	199,171
	종합소득금액	51,263	20,884	13,788	26,592
	과세표준 ^{*A}	43,913	15,119	8,938	20,666
	산출세액	10,146	2,523	1,318	4,374
	결정세액 ^{*B}	9,133	2,224	1,291	3,888
2008년	총수입금액	562,374	218,205	77,241	191,395
	종합소득금액	50,902	21,037	13,343	25,076
	과세표준	43,295	15,083	8,401	19,059
	산출세액	9,706	2,437	1,193	3,908
	결정세액	8,741	2,141	1,154	3,457
2009년	총수입금액	560,523	212,017	80,594	200,700
	종합소득금액	52,343	20,763	13,852	27,044
	과세표준	43,778	14,029	8,273	19,982
	산출세액	9,552	2,053	1,063	3,923
	결정세액	8,657	1,810	1,043	3,507
2010년	총수입금액	601,004	219,782	81,916	213,141
	종합소득금액	55,293	21,970	14,149	28,408
	과세표준	46,492	15,104	8,621	21,323
	산출세액	10,122	2,211	1,101	4,206
	결정세액	9,100	1,964	1,083	3,734
평 균	총수입금액	569,634	224,678	80,596	201,301
	종합소득금액	52,556	21,188	13,784	26,803
	과세표준	44,433	14,824	8,545	20,254
	산출세액	9,879	2,295	1,163	4,094
	결정세액	8,905	2,025	1,137	3,639

*A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B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원-6,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단,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中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④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별표 2-8〉과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5억 6,963만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각각 5,255만원과 4,443만원의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했고 89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나 그 밖의 개인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별표 2-8〉에서는 표준편차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정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표본자료를 이용한 제4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보완하기로 한다.

또한 〈별표 2-8〉의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에서 개별 항목들간의 비율차이를 비교하면 〈별표 2-9〉와 같다.

〈별표 2-9〉 사업자 유형별 비율차이의 비교

구분		외부조정	자기조정	노외부조정 (자기+기타)	전체 사업자
2007년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①)	9.33%	8.26%	16.61%	13.35%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②)	7.99%	5.98%	10.77%	10.38%
	결정세액 ÷ 총수입금액(③)	1.66%	0.88%	1.56%	1.95%
	산출세액 ÷ 과세표준(④)	23.10%	16.69%	14.74%	21.16%
	결정세액 ÷ 과세표준(⑤)	20.80%	14.71%	14.44%	18.82%
2008년	①	9.05%	9.64%	17.28%	13.10%
	②	7.70%	6.91%	10.88%	9.96%
	③	1.55%	0.98%	1.49%	1.81%
	④	22.42%	16.16%	14.20%	20.50%
	⑤	20.19%	14.19%	13.74%	18.14%
2009년	①	9.34%	9.79%	17.19%	13.47%
	②	7.81%	6.62%	10.27%	9.96%
	③	1.54%	0.85%	1.29%	1.75%
	④	21.82%	14.63%	12.85%	19.63%
	⑤	19.77%	12.90%	12.61%	17.55%

구분		외부조정	자기조정	주외부조정 (자기+기타)	전체 사업자
2010년	①	9.20%	10.00%	17.27%	13.33%
	②	7.74%	6.87%	10.52%	10.00%
	③	1.51%	0.89%	1.32%	1.75%
	④	21.77%	14.64%	12.78%	19.72%
	⑤	19.57%	13.00%	12.56%	17.51%
	①	9.23%	9.43%	17.10%	13.31%
평 균	②	7.80%	6.60%	10.60%	10.06%
	③	1.56%	0.90%	1.41%	1.81%
	④	22.23%	15.48%	13.61%	20.21%
	⑤	20.04%	13.66%	13.31%	17.97%

〈별표 2-9〉와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비율이 9.23%로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비해 낮은 반면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의 비율은 7.80%로 오히려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결과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의 항목이 기부금공제와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로 제한적이라서²⁶⁾ 〈별표 2-8〉과 같이 외부조정 대상사업자와 자기조정 대상사업자가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종합소득공제액도 812만 3,000원(5,255만 6,000원-4,443만 3,000원)과 636만 4,000원(2,118만 8,000원-1,482만 4,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조정 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의 비율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

25) ①부터 ⑤까지의 비율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간의 차이분석을 하면 Z값이 각각 1.65, 10.58, 12.81, 38.51 및 37.85로 두 가지 유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설검정은 $H_0: p \leq p_0$ $H_1: p > p_0$ 에 표본크기(n)가 크고 p_0 가 작지 않을 경우 $Z = (-p_0) \div (p_0 q_0 \div n)^{0.5}$ 의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것이다(단, 외부세무조정 또는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비율, p_0 는 가중평균비율, $q_0 = 1 - p_0$, n은 전체 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수이다).

26) 단,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고,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로 볼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크게 반영되어서 외부 세무조정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대상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과세소득인 종합소득금액을 자기세무조정的情況下에 비해 크게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별표 2-10〉과 같이 세무조정 유형별로 세무조정 전의 (당기순이익÷매출액)의 비율(이하 “비율^㉑”)을 비교하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가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높은²⁷⁾ 반면 (종합소득금액÷매출액)의 비율(이하 “비율^㉒”)은 반대로 외부세무조정의 경우가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낮은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즉,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인 외부 세무대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대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비율^㉑에 비해 비율^㉒가 증가하는 정도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비해 작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별표 2-10〉 세무조정 유형별 (당기순이익÷매출액) 비율의 비교

연 도	외부조정	자기조정
2007년	7.14%	6.51%
2008년	6.81%	6.53%
2009년	7.16%	6.89%
2010년	7.21%	7.05%
평균	7.08%	6.76%

〈별표 2-9〉를 통해 추가적으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비해 (결정세액÷총수입금액)의 비율이 높아서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더욱 크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에 더욱 공헌하는

27) 〈별표 2-10〉의 비율에 대해서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간의 차이분석을 하면 Z값이 2.93으로 두 가지 유형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별표 2-8>과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4,443만 3,000원)이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1,482만 4,000원)에 비해 매우 큰 상태에서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세율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22.23%)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15.48%)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별표 2-9>에서 (세액공제·감면÷과세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결정세액÷과세표준); 즉, (④-⑤))을 계산하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2.19%(22.23%-20.04%))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1.82%(15.48%-13.66%))에 비해 더욱 크고, <별표 2-8>에서 세액공제 감면의 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97만 4,000원(987만 9,000원-890만 5,000원)으로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27만원(229만 5,000원-202만 5,000원)에 비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인 외부 세무대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대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액공제·감면을 더욱 크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세무조정 유형에 따른 이상의 비율차이의 분석은 세무조정 유형간의 규모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자료를 이용해서 보다 엄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제4장의 분석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한다.

28) 이 밖에 세액감면액은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되고,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크게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제를 시장기구에 주로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모두 시장기구로 해결할 경우에는 현실의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더라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패하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성(externalities) 및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외부세무조정서비스 시장의 실패 원인은 공공재와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외부세무조정서비스 시장의 실패 원인은 공공재와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절에서는 이준구(1995a 및 1995b)의 논의를 참고해서 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공공재적인 특성과 관련한 분석

일반적인 사용재(private goods)와 비교할 때 공공재는 〈별표 2-11〉과 같이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가진다.

〈별표 2-11〉 공공재의 특성

- ① 소비의 비경합성 : 어떤 사람이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
- ② 소비의 배제불가능성 :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외부세무조정서비스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공공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다. 특히, 배제불가능성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급된 이후 이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길 때에는 바람직한 수준에서 생산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림 2-1>과 같이 사용재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수요곡선(d^A 와 d^B)이 주어져 있을 때 이를 수평으로 더해서 시장수요곡선(dM)을 도출할 수 있고, 시장수요곡선과 공급곡선(S)이 만나는 E의 산출량이 시장 전체의 최적생산량(Q^*)이 된다. 이와 반대로 공공재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수요곡선(D^A 와 D^B)이 주어져 있을 때 이를 수직으로 더해서³⁰⁾ 시장수요곡선(DM)을 도출할 수 있고, 시장수요곡선과 공급곡선(S)이 만나는 F의 산출량이 시장 전체의 최적생산량(Z^*)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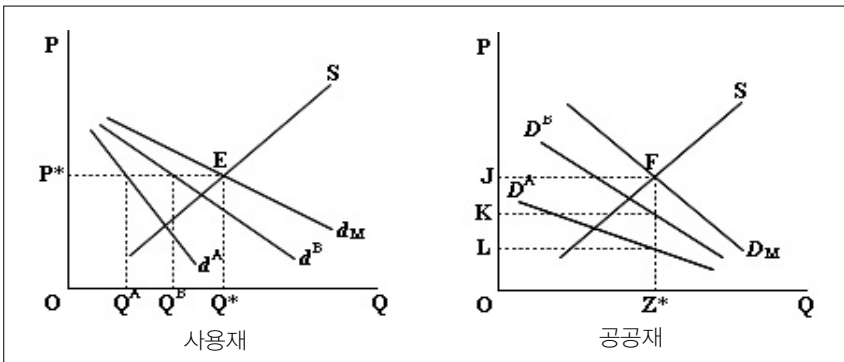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개별 수요곡선의 높이를 모두 더한 것인데, 여기서 개별 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 개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다.

29) 물론 <별표 2-11>의 특성을 완전하게 가진 순수한 공공재는 국방서비스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특성을 가지거나 두 가지 특성 중 하나만 가지는 '순수하지 못한 공공재(impure public goods)'가 더욱 흔하다. 외부세무조정서비스도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순수한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이후의 분석은 적용할 수 있다.

30) 사용재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기 때문이고, 공공재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더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사람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수요를 사실대로 표출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표출하려는 유인(무임승차의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표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시장수요곡선은 각 사람이 자신의 수요를 사실대로 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시장수요곡선(즉, D_M)보다³¹⁾ 낮을 것이고, 그 결과 시장균형 생산량도 최적생산량(Z^*)에 비해 작아질 것이다.

〈그림 2-1〉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생산수준



이상의 논의를 외부세무조정서비스 시장에 적용하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 서비스의 가장 큰 수요자이면서 반드시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경제활동 참가자들은 역시 외부세무조정 서비스의 수요자이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또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도 세무대리인

31) D_M 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한 각 사람의 수요곡선을 '가상수요곡선(pseudo-demand curve)'라고 하는 것도 수요를 사실대로 표출한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외부세무조정 서비스의 수요자로는 과세관청 외에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이 있다. 즉, 동(同) 기관들은 대출, 투자, 보증, 신용평가 등의 의사결정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생산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 및 그 정도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였다.

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조정비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낮추려는(즉, 자신의 수요곡선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외부세무조정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최적생산량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대상사업자가 세무조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세무조정의 질이 낮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발적 세무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따라서 외부세무조정 시장의 균형생산량을 최적생산량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반영한 외부세무조정의 공급곡선(〈그림 2-1〉의 S)을 낮추기 위한 외부세무조정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외부성과 관련한 분석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외부성(externalities)이 창출되었다고 한다. 외부성은 어떤 경제현상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외부성이 존재할 때 어떤 행동과 결부되어 개인이 인식하는 비용이나 효익이 사회의 관점에서 본 비용이나 효익과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장기구는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게 된다.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소비자 개인이 인식하는 한계편익(PMB, private marginal benefit)과 생산자 개인이 인식하는 한계비용(PMC,

33) 그 밖에 매출액의 증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가 회계처리의 조작을 통해 매출액을 축소시켜서 외부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private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조건($PMB=PMC$)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가 스스로와 관련된 편익이나 비용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뿐, 사회적인 관점에서 측정된 편익이나 비용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인 한계 편익(SMB, social marginal benefit)과 사회적인 한계비용(SMC, social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조건($SMB=SMC$)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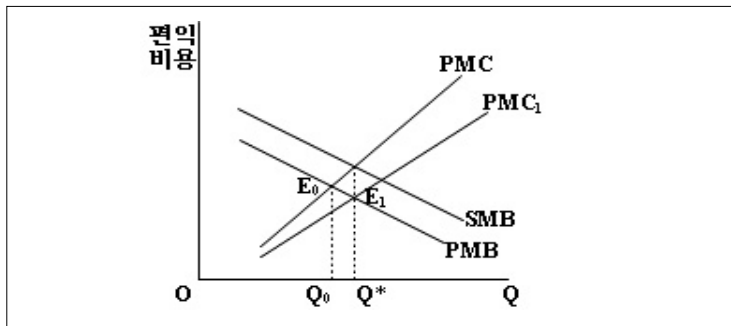
만약 아무런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PMB=PMC$ 의 조건이 성립하기만 해도, $SMB=PMB$ 이고 $SMC=PMC$ 이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즉, $SMB=PMB=PMC=SMC$). 그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한계편익이나 한계비용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것들과 달라지게 된다.

외부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한 외부성(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과 해로운 외부성(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성은 PMC 와 SMC 사이에 괴리를 일으키고 소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성은 PMB 와 SMB 사이에 괴리를 일으키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은 구매자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공공재적인 성격의 서비스이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외부경제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세무조정을 통한 대상사업자의 사적 한계편익보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커지게 된다($SMB>PMB$). 이 경우에 외부세무조정의 소비자인 대상사업자는

사적인 한계편익이 사적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PMB=PMC$) 수준까지만 소비하게 되므로, $SMB>PMB=PMC=SMC$ 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결국 $SMB>SMC$ 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그림 2-2>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2-2> 외부경제를 고려한 외부세무조정의 적정생산량



<그림 2-2>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외부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외부세무조정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PMB=PMC$ 인) 외부세무조정의 생산량은 Q_0 인데 이것은 외부경제까지 고려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과 같은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SMB=SMC=PMC$ 인) 사회적 최적생산량인 Q^*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세무조정의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Q_0 \rightarrow Q^*$) 조세지원 등을 통해 대상사업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도록($PMC \rightarrow PMC_1$, 균형점은 $E_0 \rightarrow E_1$)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연구설계

제2절에서는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외부세무조정의 경제적 효과(외부세무조정의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경제의 존재)가 발생합

수 있고, 동(同)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사업자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외부세무조정의 사회적 편익을 얻는 수요자로는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요자는 과세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각각의 수요자들이 얻는 사회적 편익에 비례하여 대상사업자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지만, 편익의 측정 등의 문제로 인해 동(同) 방법을 실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하부구조인 외부세무조정의 성격을 반영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고 외부성을 내재화(internalize)시키는 것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경제적 역할인 점을 고려하면 대상사업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세지원이나 보조금의 지급 등이 시장의 실패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세무조정의 대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타당성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과세관청이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현저한 사회적 편익을 얻는다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사회적 편익을 얻는 방식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과세관청이 사회적 편익을 얻는 방식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외부세무조정이 납부세액의 계산 외에 실제 조세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상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주장은 더욱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설문분석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이 과세관청의 조세행정, 특히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외부세무조정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

제1절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분석

제2장의 분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同)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청이 동(同)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라고(즉,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경제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분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조세행정, 특히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³⁴⁾³⁵⁾³⁶⁾ 2012년

34)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부록〉과 같다.

35) 설문을 위한 항목별 평가척도는 3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평가척도에 사용할 항목의 수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즉, 항목의 수가 많으면 정밀한 척도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측정의 변별력이 높아지는 반면, 응답자 입장에서는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보면 부담스럽고 항목들 간의 구분에 둔감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 국세공무원들은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설문을 제시할 경우에는 회수되는 설문이 매우 작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설계 단계에서 항목의 수가 작은 설문을 구성하였다. 박명호와 심태섭(2008) 등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3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의 사례가 있다.

36) 또한, 설문을 위한 항목별 평가척도로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의 수가 같지 않은 불균형척도(unbalanced scale)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균형척도(balanced scale)를 이용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반응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불균형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척도의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 국세공무원들은 국고주의적 관점의 보수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불균형척도를 이용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전술한 박명호와 심태섭(2008)을 포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불균형척도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설문은 1개의 부정적 항목과 2

1월 16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93명이 설문
문에 응답하였는데,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별표 3-1>과 같다.

〈별표 3-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응답자(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61	65.6%
	여성	32	34.4%
직급	5급 이상	10	10.8%
	6급	26	28.0%
	7급	32	34.4%
	8급	17	18.3%
	9급	8	8.6%
국세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	16	17.2%
	5년 이상 15년 미만	39	41.9%
	15년 이상 25년 미만	26	28.0%
	25년 이상	12	12.9%
세무조사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31.2%
	과거에 종사	40	43.0%
	종사 경험 없음	24	25.8%
세무조사업무 종사 기간 ³⁷⁾	4년 미만	33	47.8%
	4년 이상 7년 미만	24	34.8%
	7년 이상 10년 미만	9	13.0%
	10년 이상	3	4.3%

개의 서로 다른 정도의 긍정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의 부정적 항목은 다양한 정도의 부정적 응답을 포괄하도록 하고 2개의 긍정적 항목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려는 주된 관심의 대상인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국세공무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어떤 형태의 계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7) “법인조사업무 종사 여부” 설문에서 “현재 종사”나 “과거에 종사”라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별표 3-1〉과 같이 응답자의 성별구성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5.6%와 34.4%를 차지했고, 직급구성은 5급 이상, 6급, 7급, 8급 및 9급이 각각 10.8%, 28.0%, 34.4%, 18.3% 및 8.6%를 차지했으며, 국세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 미만, 5년 이상, 15년 이상 및 25년 이상이 각각 17.2%, 41.9%, 28.0% 및 12.9%를 차지했다.³⁸⁾ 또한, 이번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세무조사상 활용실태와 관련한 응답자들의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는 응답자의 31.2%가 현재 세무조사에 종사하고 있고, 43.0%가 현재는 종사하지 않지만 과거에 세무조사 업무경험이 있으며, 25.8%가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에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업무의 종사기간은 4년 미만, 4년 이상, 7년 이상 및 10년 이상이 각각 47.8%, 34.8%, 13.0% 및 4.3%를 차지했다.

38) 이상의 구성비율은 〈별표 3-2〉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의 국세공무원의 구성비율과도 유사하다.

〈별표 3-2〉 국세공무원 구성비율 (2010년 국세통계연보)

구분		구성비율	구분		구성비율
성별	남성	71.9%	국세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	28.4%
	여성	28.1%		5년 이상	29.2%
직급	5급 이상	7.6%		15년 이상	24.2%
	6급	24.6%		25년 이상	18.2%
	7급	24.2%			
	8급	26.1%			
	9급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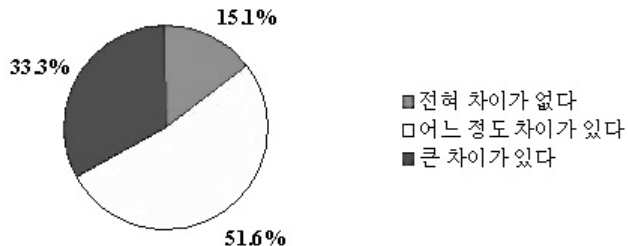
제2절 설문분석의 결과 및 해석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 (설문항목 Q1)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5.1%(14명),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비율은 51.6%(48명), “큰 차이가 있다”라는 비율은 33.3%(3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 값=6.74).

〈그림 3-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

(설문)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에 관한 분석결과³⁹⁾ 국세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동(同)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부세무 조정제도가 비교적 당초의 취지와 같이 납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세법에 따른 복잡한 과세소득과 세액의 계산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국세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신뢰성 (설문항목 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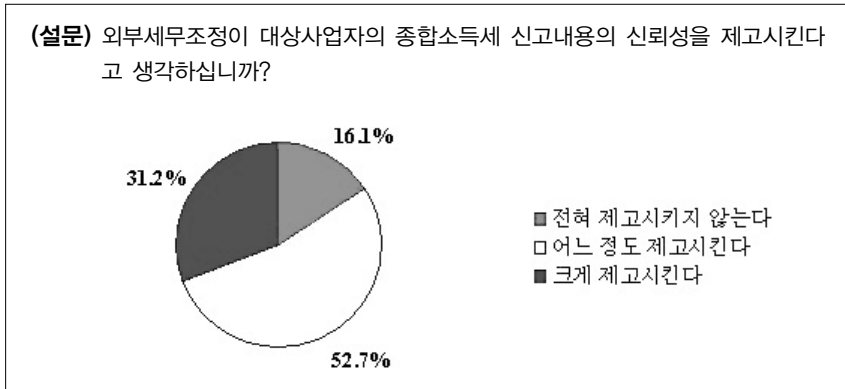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세무조정이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제고시키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6.1%(15명), “어느 정도 제고시킨다”라는 비율은 52.7%(49명), “크게 제고시킨다”라는 비율은 31.2%(29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에 관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값 = 6.53).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 국세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동(同)서비스를 받은 대상사업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내용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도 역시 유용성 인식의 경우

39) 실증분석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와 “큰 차이가 있다”를 긍정적 응답으로 보고, “전혀 차이가 없다”를 부정적 응답으로 본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가설검정은 $H_0: \hat{p} \leq p_0$ $H_1: \hat{p} > p_0$ 에 표본크기(n)가 크고 p_0 가 작지 않을 경우 $Z = (-\hat{p}_0) \div (p_0 q_0 \div n)^{0.5}$ 의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것이다(단, $\hat{p}$ 은 표본비율, $q_0 = 1 - p_0$ 이고, 설문조사의 분석에서 $n=93$ 이고, $p_0=0.5$ 이다). 이하의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와 마찬가지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국세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그림 3-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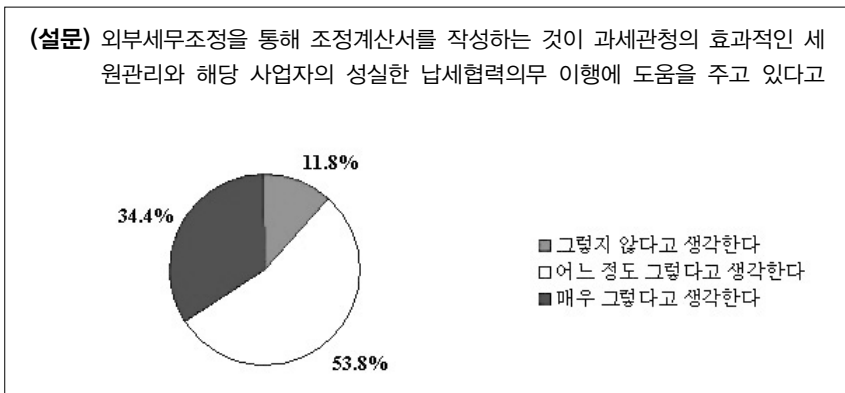
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3)

다음으로,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해당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34.4%(32명),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53.8%(50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40) 설문 Q2(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와 유사한 설문 Q12(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동(同)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업종별 평균 소득율이나 부가가치율 등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도 설문 Q2와 유사하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다”라는 비율은 11.8%(1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Z 값 = 7.36) 특히 동(同)서비스의 유용성 인식이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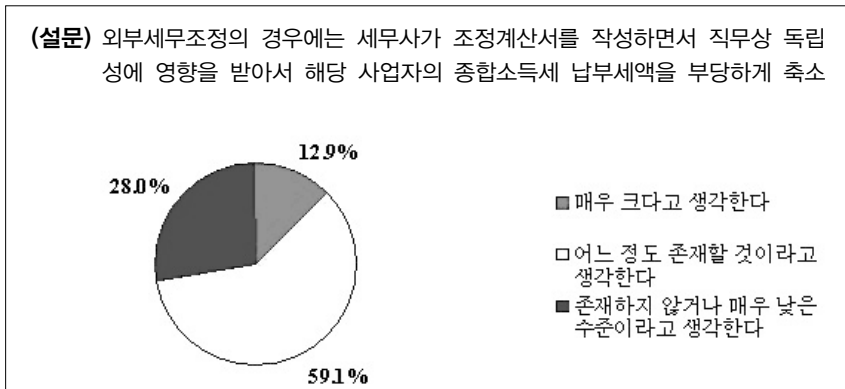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국세공무원들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이 의도한 정책적 취지가 비교적 잘 달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설문과 같이 동(同) 제도의 필수적인 성격과 함께 이를 더욱 개선할 경우에는 국세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41) 설문 Q3(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와 유사한 설문 Q5(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법 질서의 준수에 미치는 영향)와 Q6(절세를 위한 세무사의 노력과 세원관리비용의 절감을 고려할 때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국가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도 설문 Q3과 유사하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4)

다음으로,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전술한 조성훈(2008)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직무상 독립성에 영향을 받아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2.9%(12명),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59.1%(55명),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28.0%(26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Z 값 = 7.15)⁴²⁾ 대상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동(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42) 다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를 부정적 응답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Z 값이 -4.25가 되어서 오히려 부정적 응답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同)응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응답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Z 값이 2.27이 되어서 본문과 같이 긍정적 응답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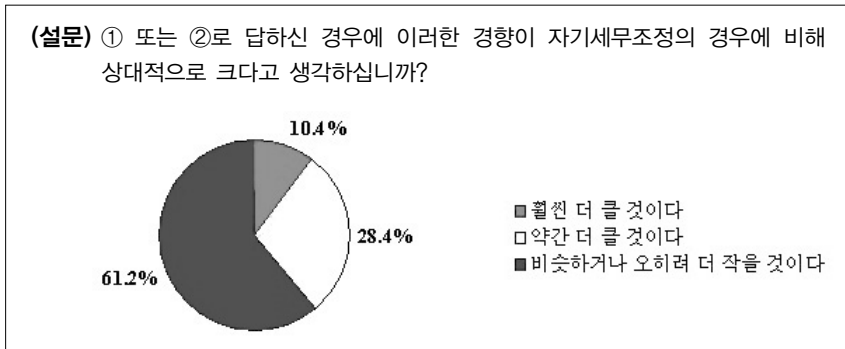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대상사업자의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국세공무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同) 서비스가 과세관청이 의도한 정책적 취지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의 사익추구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불성실신고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중대한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동(同) 제도의 신뢰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것이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는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질문에 대해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0.4%(7명), “약간 더 클 것이다.”라는 비율은 28.4%(19명),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을 것이다.”라는 비율은 61.2%(41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 대상사업자의 조세회피 경향이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특별히 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_{값} = 1.83$).⁴³⁾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정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세회피는 불가피하지만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과도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의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국세공무원

43)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을 것이다”라는 응답만을 고려한 것이다.

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그림 3-5〉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자기세무조정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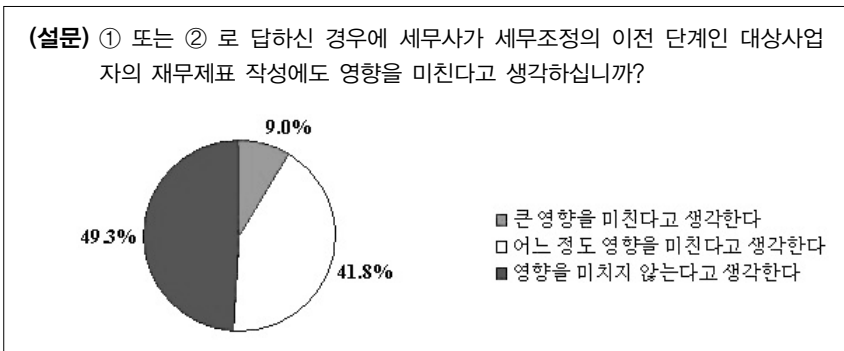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것이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는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이전 단계인 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 질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9.0%(6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41.8%(28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49.3%(33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 세무사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

44) 설문 Q4(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와 유사한 설문 Q7(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고객확보를 위한 부실신고를 유도할 가능성)과 Q8(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지출을 강요하는지의 여부)의 결과도 설문 Q4와 유사하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무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Z값=-0.12$).⁴⁵⁾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정을 통한 조세회피를 위해서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처리를 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⁴⁶⁾ 것 등과 같은 적극적인이고 부정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공무원들이 다소 유보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6〉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세무사의 사전적 개입 가능성**



5.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9)

다음으로,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귀하께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 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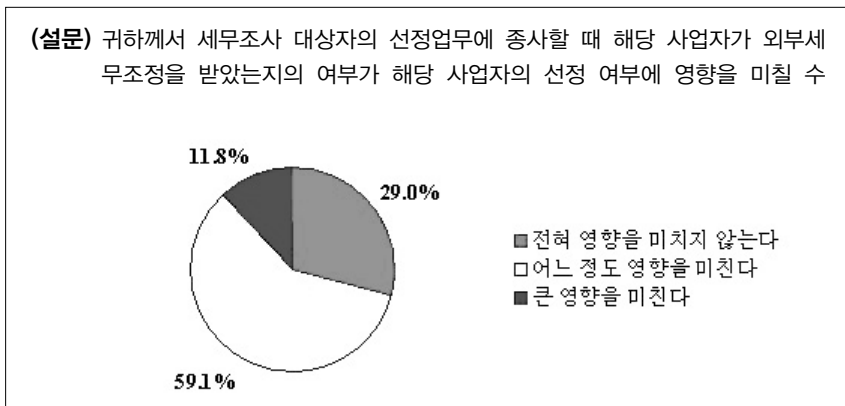
4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만을 고려한 것이다.

46)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은 대개 회계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별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비율은 29.0%(27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비율은 59.1%(55명),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비율은 11.8%(1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Z 값 = 4.04),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이나 신뢰성에 비해서는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낮았다.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3>과 같다.

<그림 3-7>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별표 3-3>과 같이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비율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고, 특히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현재 세무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분석내용과 같이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무조정의 유용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과정에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명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별표 3-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자 (명)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Z값)
			①	②	③	
전체		93	27(29.0%)	55(59.1%)	11(11.8%)	4.04
세무조사 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10(34.5%)	19(65.5%)	0(0.0%)	1.67
	과거 종사	40	12(30.0%)	21(52.5%)	7(17.5%)	2.53
	종사경험無	24	5(20.8%)	15(62.5%)	4(16.7%)	2.86
세무조사 업무 종사 기간	4년 미만	33	11(33.3%)	18(54.5%)	4(12.1%)	1.91
	4년 이상	24	6(25.0%)	15(62.5%)	3(12.5%)	2.45
	7년 이상 ⁴⁷⁾	12	5(41.7%)	7(58.3%)	0(0.0%)	0.58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③ 큰 영향을 미친다.

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세무조사 업무의 종사기간이 7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응답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동(同) 서비스에 대한 국세공무원들의 사전적인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세행정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체 국세공무원에게 확인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 동(同)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적 인식과 사후적 인식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의 여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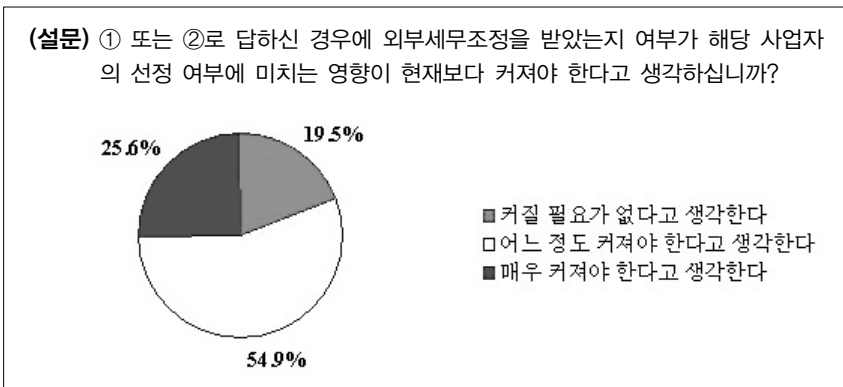
47) 〈별표 3-1〉과 같이 “10년 이상”인 응답자의 수가 작아서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응답자와 합쳐서 분석하였다. 이하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 질문에 대해 “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9.5%(16명),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54.9%(45명), “매우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25.6%(2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 값 = 5.52).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4>와 같다.

〈그림 3-8〉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



<별표 3-3>과는 반대로 <별표 3-4>와 같이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비율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세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실제 동(同)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동(同) 서비스의 제도적 영향(즉, 외부세무조정 여부)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적용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7호, 2010.12.31.)과 같은 관련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져야 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 해결의 필요성은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세무조사 업무의 종사기간과는 관계없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동(同) 서비스를 실제 조세행정상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별표 3-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

구분		응답자 (명)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Z값)
			①	②	③	
전체		82	16(19.5%)	45(54.9%)	21(25.6%)	5.52
세무조사 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6(20.7%)	12(41.4%)	11(37.9%)	3.16
	과거 종사	33	4(12.1%)	21(63.6%)	8(24.2%)	4.35
	종사경험無	20	6(30.0%)	12(60.0%)	2(10.0%)	1.79
세무조사 업무 종사 기간	4년 미만	29	5(17.2%)	16(55.2%)	8(27.6%)	3.53
	4년 이상	21	4(19.0%)	11(52.4%)	6(28.6%)	2.84
	7년 이상	12	1(8.3%)	6(50.0%)	5(41.7%)	2.89

* ① 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매우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8) 설문 Q9 및 Q9-1(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및 미쳐야 할 영향)과 유사한 설문 Q10 및 Q10-1(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반영된 정도 및 반영되어야 할 정도)의 결과도 〈별표 3-3〉 및 〈별표 3-4〉와 유사했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6.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11)

이상의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분석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강제적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이번 절에서는 임의적 세무조정서비스로 분석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즉, 특정 개인사업자가 강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경우에 이러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호제공행위(signalling)가 추가적인 투입자원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국세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귀하께서 특정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36.6%(34명), “확률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다”라는 비율은 54.8%(51명), “확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비율은 8.6%(8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의 비율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 값 =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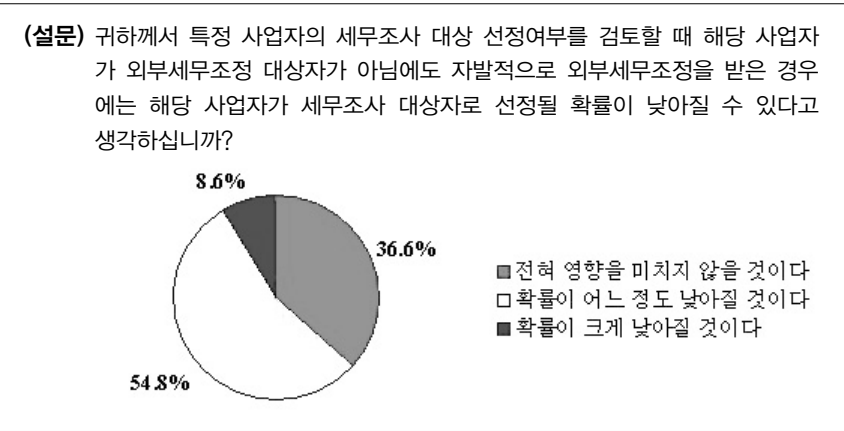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5>와 같다.

<별표 3-5>와 같이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비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세공무원들이 임의세무조정서비스를 통해 향상된 세무조정의 품질과 신뢰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⁴⁹⁾ 따라서, 국세공

49) 그러나 부정적 응답의 비율도 상당히 높는데 이것은 해당 사업자들이 세무조정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해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국세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강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성실한 신고와 함께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9〉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별표 3-5〉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자 (명)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Z값)
			①	②	③	
전체		93	34(36.6%)	51(54.8%)	8(8.6%)	2.59
세무조사 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9(31.0%)	17(58.6%)	3(10.3%)	2.04
	과거 종사	40	15(37.5%)	21(52.5%)	4(10.0%)	1.58
	종사경험無	24	10(41.7%)	13(54.2%)	1(4.2%)	0.82
세무조사 업무 종사 기간	4년 미만	33	12(36.4%)	20(60.6%)	1(3.0%)	1.57
	4년 이상	24	8(33.3%)	11(45.8%)	5(20.8%)	1.63
	7년 이상	12	4(33.3%)	7(58.3%)	1(8.3%)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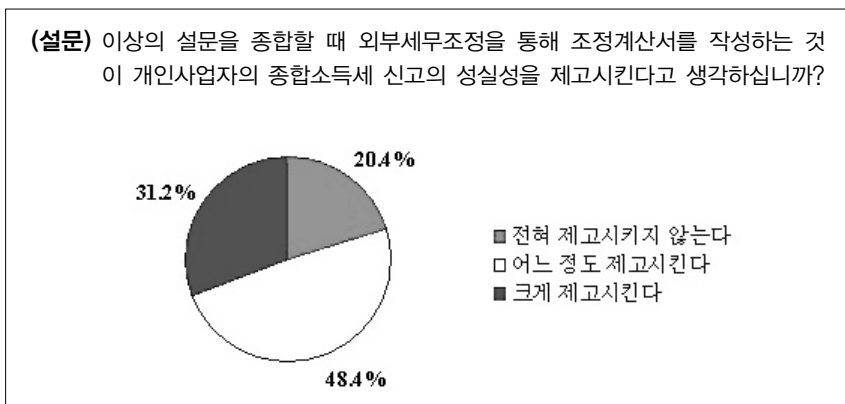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② 확률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다. ③ 확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7.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설문 항목 Q13)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이상의 설문을 종합할 때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제고시키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4%(19명), “어느 정도 제고시킨다”라는 비율은 48.4%(45명), “크게 제고시킨다”라는 비율은 31.2%(29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의 비율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 값 = 5.70).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6>과 같다.

〈그림 3-10〉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별표 3-6〉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자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명)	①	②	③	(Z값)
전체		93	19(20.4%)	45(48.4%)	29(31.2%)	5.70
세무조사업 무 종사 여 부	현재 종사	29	12(41.4%)	12(41.4%)	5(17.2%)	0.93
	과거 종사	40	6(15.0%)	21(52.5%)	13(32.5%)	4.43
	종사경험無	24	1(4.2%)	12(50.0%)	11(45.8%)	4.49
세무조사업 무 종사 기 간	4년 미만	33	7(21.2%)	16(48.5%)	10(30.3%)	3.31
	4년 이상	24	8(33.3%)	10(41.7%)	6(25.0%)	1.63
	7년 이상	12	3(25.0%)	7(58.3%)	2(16.7%)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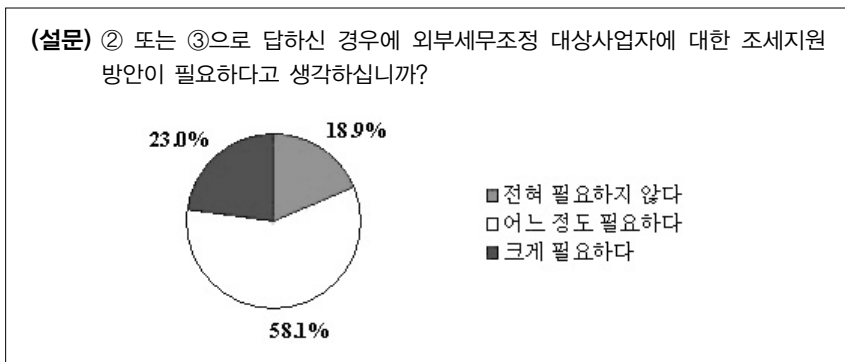
* ① 전혀 제고시키지 않는다. ② 어느 정도 제고시킨다. ③ 크게 제고시킨다.

〈별표 3-6〉과 같이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비율 차이가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상에서 분석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세공무원들이 동(同)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단, 현재 세무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세무조사 업무의 종사기간이 장기간인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응답자들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면서도 세무조사 업무 종사 경력에 따라 강화될 수 있는 국고주의적 성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킬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 “어느 정도 제고시킨다” 또는 “크게 제고시킨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② 또는 ③으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 질문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8.9%(14명), “어느 정도 필

요하다”라는 비율은 58.1%(43명), “크게 필요하다”라는 비율은 23.0%(17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 것에 대한 보상 또는 지속적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 값 = 5.35).⁵⁰⁾ 그러나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다고 답변한 반면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는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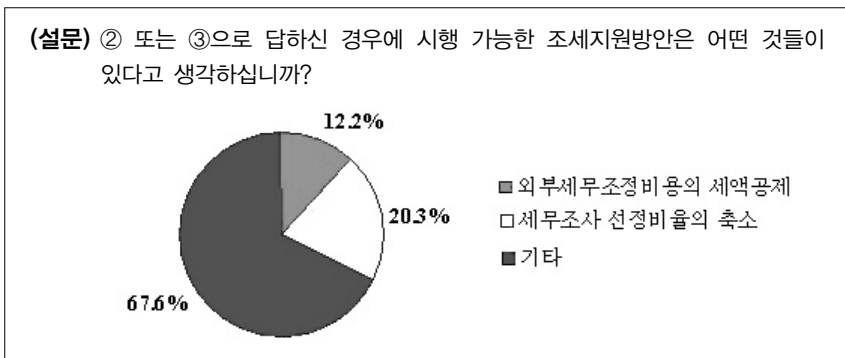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 “② 또는 ③으로 답하

50)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도 대체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51) 설문 Q13-1(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에서 파생한 Q14(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조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무사회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의 결과도 〈그림 3-11〉과 유사했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신 경우에 시행가능한 조세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질문에 대해 “외부세무조정비용의 세액공제”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2.2%(9명), “세무조사 선정비율의 축소”라는 비율은 20.3%(15명), “기타”라는 비율은 67.6%(50명)로 조사되었고, “기타” 중에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한 응답자는 16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세공무원들이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설문에서 제시한 “외부세무조정비용의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선정비율의 축소”로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것은 법령(소득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반영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안들을 단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별표 3-7>에서 응답자들이 “기타”의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은 대다수가 법령의 개정 없이도 세무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란 점이 응답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2〉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



〈별표 3-7〉 “기타”의 구체적인 답변 (중복 제외)

외부세무조정비용의 소득공제 ⁵²⁾	세무조사의 유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특별공제 중 항목별 공제의 적용	성실사업자 선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시 감안	세금포인트 제공

8. 설문조사의 소결론

이번 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이상의 분석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과세관청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동(同)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도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앞선 분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대상 사업자의 단순한 과세소득과 세액의 계산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세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同)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이후의 장에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이번 장에서 보인 동(同)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공공재적 성격과 외부효과의 제공)을 보일 수 있고, 이후의 장에서는 이러한 동(同)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모색하기로 한다.

52)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1.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동(同)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동(同) 서비스로 인해 국가의 이익보다는 고객확보와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한 불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보고이익을 조정하게 되는데, 보고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비용은 크게 조세비용(tax costs)과 비조세비용(non-tax cos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비조세비용은 재무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s)인데 동(同) 비용은 보고이익이 낮을 경우 주가가 하락하거나 자본비용이 상승하는 것 등과 같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법인사업자는 보고이익을 공시할 때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문제(trade-off)가 발생하기⁵³⁾ 때문에 효율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의 관점에서는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등을 고려한 총비용(all costs)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보고이익을 결정하게

53) 즉, 보고이익이 높을 경우에는 조세비용은 커지는 반면 재무보고비용은 작아지게 되지만, 반대로 보고이익이 낮을 경우에는 조세비용은 작아지는 반면 재무보고비용은 커지게 된다.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보고비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비용의 최소화가 유일한 고려대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금융기관 차입금도 대부분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보고이익이 재무보고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⁵⁴⁾ 편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상의 보고이익을 최대한 낮추고 보고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조세비용(종합소득세 부담액)을 낮추려는 경제적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고이익의 축소를 통해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매우 낮기⁵⁵⁾ 때문에 사후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이익의 축소를 통해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일련의 과정에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인사업자가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조세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무조정을 위한 전문적 세법 지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자의 개인적 경험과 동업자간에 공유된 지식 등을 통해

54)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와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회계감사의 대상을 주식회사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회사들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자산총액을 100억원으로 제한하

외부세무조정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세비용을 의도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이익의 축소 단계까지는 해당 개인사업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지만, 보고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무사가 고객확보 등을 위해 세무조정에 대한 전문가적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해당 사업자의 의도를 더욱 뒷받침하여 조세회피를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무조정에 대한 전문가적 통제를 통해 조세회피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반된 조세회피 확대 가능성과 축소 가능성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보고이익을 NI, 자기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인 종합소득금액이 보고이익에 비해 증가하는 비율(즉, (종합소득금액 ÷ 당기순이익))을 TA_0 , 자기세무조정을 통한 종합소득금액을 TI_0 라고 하면 식(1)의 관계가 성립한다.

는 것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작고 감사수수료의 부담이 회사규모에 비해 과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55) 2007년 이후의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연도별 세무조사 비율은 <별표 4-1>과 같다.

<별표 4-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연도별 세무조사 비율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확정신고인원	조사인원	세무조사비율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세무조사비율
2007년	2,736,478	4,090	0.15%	372,393	4,174	1.12%
2008년	3,074,419	3,335	0.11%	393,700	2,974	0.76%
2009년	3,584,432	3,068	0.09%	416,117	3,867	0.93%
2010년	3,570,816	3,624	0.10%	440,514	4,430	1.01%
계	12,966,145	14,117	0.11%	1,622,724	15,445	0.95%

$$NI \times TA_0 = TI_0 \quad \dots\dots\dots (1)$$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보고이익에 비해 증가하는 비율을 TA_1 , 외부세무조정을 통한 종합소득금액을 TI_1 이라고 하면 식(2)의 관계가 성립한다.

$$NI \times TA_1 = TI_1 \quad \dots\dots\dots (2)$$

식(2)에서 TA_1 은 다시 TA_0 와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감소하는 조세회피의 정도인 r_1 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TA_1 &= TA_0 \times r_1 \\ NI \times TA_0 \times r_1 &= TI_1 \quad \dots\dots\dots (3) \end{aligned}$$

식(1)과 식(3)을 비교하면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의 과세소득인 TI_0 와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의 과세소득인 TI_1 의 대소관계는 결국 r_1 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r_1 < 1$ 인 경우에는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통해 과세소득 계산에서 전문가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r_1 > 1$ 인 경우에는 동(同) 취지가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고이익이 동일하면서 세무조정의 형태가 다른 비교대상 기업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의 논의를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인 $(TI \div NI)$ 에 적용하는 것이 본 장의 경제적 분석에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고이익으로 표준화한 $(TI \div NI)$ 로 비교하더라도 역시 r_1 의 값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정책적 취지가 실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표현하면 식(4)와 같다.

$$(TI_1 \div NI) \div (TI_0 \div NI) = r_1 \dots\dots\dots(4)$$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식(4)의 r_1 의 값이 1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의 여부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비율과 1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통계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실증분석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인 $(TI \div NI)$ 이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물론 두 가지 판단방법 간에는 아래와 같이 필요충분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후자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전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r_1 > 1 \leftrightarrow (TI_1 \div NI) - (TI_0 \div NI) > 0 \dots\dots\dots(5-1)$$

$$r_1 < 1 \leftrightarrow (TI_1 \div NI) - (TI_0 \div NI) < 0 \dots\dots\dots(5-2)$$

귀무가설의 형태로 수립한 실증분석의 첫 번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이 식(5-2)를 표현한 것이다.

〈연구가설 1〉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낮을 것이다.

2. 조세감면의 정도의 분석

과세소득에 대한 이상의 논의와 함께 조세감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 간의 조세회피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과세소득인 종합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종합소득공제의 차이가 있으면 두 가지 세무조정의 유형 간에 조세회피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개인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종합소득공제는 조세회피의 분석 목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세감면을 통한 분석과 관련하여 <별표 2-9>와 같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규모를 통해 두 가지 세무조정 유형 간의 조세회피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동(同) 규모는 과세소득이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전병욱(2009) 등과 같이 최저한세 제도에서⁵⁶⁾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감면의 적극성을 측정하여 동(同) 변수를 통해 두 가지 세무조정의 유형 간에 조세회피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즉,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종합소득세 감면의 적극성으로 측정한 조세회피의 정도가 더 큰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후술하는 연구표본과 같이 사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4-2>에서 요약해서 제시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와 같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세무조정

<별표 4-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⁵⁷⁾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NI
(+) 세무조정	TA
과세표준	TB
(×) 세율	<i>t</i>
산출세액	TL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C
부담할 세액	TP

56) 1990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자들에게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적용하였으나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과도한 조세지원의 적용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 간의 조세부담의 공정성과 조세수입의 감소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1991년부터 조세지원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57) 약어들은 임의로 정하였다.

을 거친 후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별표 4-2〉에서 세무조정(TA)은 조세감면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세무조정(이하 “TA₀”)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하는 조세감면(이하 “TA₁”,⁵⁸⁾ $TA=TA_0-TA_1$)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C)는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들(이하 “C₁”)이지만 조세감면과는 무관한 소득세법상의 제도들도 있다(이하 “C₀”, $C=C_0+C_1$, $C \div C_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필요경비산입 등, TA₁),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C₁)의 조세감면을⁵⁹⁾ 적용한 후의 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호 서식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차감세액”, 이하 “NT”(normal tax))이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세표준(즉, $(TB+TA_1)=(NI+TA_0)$, 이하 “감면전 과세표준”)에 세율(t)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다시 35%를 곱하여 세액(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최저한세”, 이하 “AMT”(alternative minimum tax))에 미달하는 경우(즉, $(AMT) > NT$)인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자의 조세부담(이하 “MT”(minimum tax))은 $MT=\max(AMT, NT)$ 으로 표현할 수 있다.⁶⁰⁾ 여기서 다시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C₀)를 적용하면 부담할 세액(〈별표 4-

58)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준비금, 과세이연, 비과세 및 소득공제

59)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항목들도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에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와 제73호 서식인 “감면세액 조정명세서”에 열거된 항목들만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6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3)의 “TP”)을 계산할 수 있다.

〈별표 4-3〉 최저한세를 반영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

$$\begin{aligned} MT &= \max(AMT, NT) \\ AMT &= (NI + TA_0) \cdot 0.35t \\ NT &= \{(NI + TA) \cdot t\} - C_1 = \{(NI + TA_0 - TA_1) \cdot t\} - C_1 \\ TP &= MT - Co = \max(AMT, NT) - Co \end{aligned}$$

그러나 (AMT > NT)인 경우에는 NT를 AMT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즉, TA_1 및 C_1)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금액을 배제하기 때문에 최저한세가 적용될 정도로 당초 조세감면을 많이 적용한(즉, 당초 (AMT > NT)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적용한 조세감면은 의도했던 금액보다는 (AMT = NT)가 되도록 작아지게 조정한 것이다(즉, 조정 전에는 $\{(NI + TA_0) \cdot amt\} [\{(NI + TA_0 - TA_1) \cdot t\} - C_1]$ 이었지만 TA_1 과 C_1 대신 $\hat{TA}_1 (\leq TA_1)$ 과 $\hat{C}_1 (\leq C_1)$ 을 적용하여 $\{(NI + TA_0) \cdot amt\} = [\{(NI + TA_0 - \hat{TA}_1) \cdot t\} - \hat{C}_1]$ 이 성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정의하는 개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감면의 적극성은 식(6)과 같이 정의한 CREDIT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CREDIT = \frac{AMTL - MT}{AMTL - AMT} \dots\dots\dots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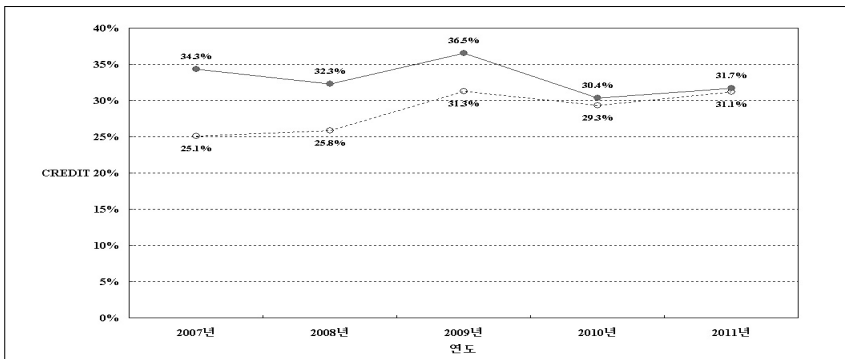
단, $AMTL = (NI + TA_0) \cdot t$

CREDIT의 분모인 (AMTL - AMT)는 최저한세하에서 특정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세감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담할 세액

의 감소액이고 분자인 ($AMTL > MT$)는 특정 사업자가 실제 적용한 조세 감면을 통해 얻은 부담할 세액의 감소액이다.⁶¹⁾⁶²⁾ 따라서, CREDIT는 특정 사업자가 조세감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담할 세액의 감소가능액 중에서 실제 적용한 금액의 비율이고, 간단하게 “실제 이용한 조세감면 비율” 또는 “조세감면의 적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0 < CREDIT < 1$ 인데 조세감면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CREDIT = 0$ 이고, 조세 감면을 많이 적용할수록 CREDIT의 값이 증가하며, 최저한세에 해당할 정도로 조세감면을 많이 적용한 경우에는 $CREDIT = 1$ 이 되는 것이다.⁶³⁾

- 61) 전술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AMT > NT$)인 사업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업자들은 ($AMT = NT$)가 되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 후에는 전체 사업자에 대하여 ($AMT \leq NT$)의 관계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후술하는 $0 \leq CREDIT \leq 1$ 의 관계가 성립한다.
- 62) 물론, “조세감면의 정도”의 측정은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세전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MTL = (NI + TA_0) \cdot t$ 에서 ($NI + TA_0$) > 0 인 경우에만 동(同)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NI + TA_0$) ≤ 0 인 경우에는 CREDIT의 분모가 0이므로 ($AMTL = AMT = 0$) 동(同) 개념을 정의할 수 없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조세감면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같으므로 $CREDIT = 0$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63) 전병욱(2011)이 국제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법인들의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평균적인 법인세 감면의 적극성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평균적인 법인세감면의 적극성



이상과 같이 정의한 종합소득세 조세감면의 적극성(CREDIT) 변수를 이용해서 귀무가설의 형태로 수립한 실증분석의 두 번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2〉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종합소득세 감면의 적극성이 더 클 것이다.

위 연구가설은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항목들을 적용하는 대신 직무상 독립성에 영향을 받아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제2절 연구표본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각각 50명씩의 개인사업자의 신고관련 자료를⁶⁴⁾ 무작위의 방법으로 사적(私的)으로 수집하였다.

연구표본으로 수집한 개인사업자들에는 〈별표 2-4〉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의 대상자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50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인 개인사업자를 연구표본의 수집 대상에서

64)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조정계산서(별지 제46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의 서식),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40호의6 서식),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40호의7 서식),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 서식) 등이다.

제외한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로 인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조세회피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도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발적인 추가적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별표 2-3>의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연구표본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역시 유사한 이유로 조세회피의 특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후의 연구 모형에서 채택한 설명변수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의 문제점으로 인해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비해 다른 방식의 단순화된 세무조정을 적용하기⁶⁵⁾ 때문에 역시 비교가

65) 일반납세방식과 성실납세방식을 비교하면 <별표 4-4>와 같다.

<별표 4-4> 성실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특례(법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

구분	일반납세방식	성실납세방식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임의상각제도	강제상각제도
감가상각범위액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구분	미상각잔액×정액법 상각률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정액법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내 신고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즉시상각의제 대상 중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300만원 이하
대학교, 법정·특례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단계별로 한도액 적용	공익성기부금 합계액 - (수입금액×0.5%)
기부금 이월손금산입기간	1년 또는 3년	이월손금산입 배제
접대비 한도액	1,200만원(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률)	1,9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5% ② (퇴직급여추계액×30%) - 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5% ② (총급여액×20%) - 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부적용

능성의 측면에서 연구표본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연구기간인 2010년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재무보고나 세무조정상의 특성이 계속사업자와 다를 수 있고 역시 이후의 연구모형에서 채택한 설명변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다.⁶⁶⁾ 이 밖에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포함될 경우에는 과세소득이나 세액계산 방법이 순수한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구표본에서 제외했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과세소득계산 방법이 그 밖의 업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실증분석에서 필요한 업종 구분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고,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동(同)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에 포함되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선택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표준손익계산서상 “기부금”이나 조정계산서상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부금 공제”가 계상된 개인사업자는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는데,⁶⁷⁾

66)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비용을 고려해서 개업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구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에서는 신규사업자인지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연구표본의 수집과정에서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물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을 적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업 초기의 개인사업자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동(同) 세액감면도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본 연구의 연구표본은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수집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동(同)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67) 2007년 이후의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중에서 기부금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에 포함되는 기부금 공제를 받은 비율은 <별표 4-5>와 같이 18%정도이다.

그 결과 연구표본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들의 과세소득은 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과 일치하게 된다.

과세소득(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 + 사업소득금액 + ... + 기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다른 소득금액이 포함될 경우 제외)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제외)
 =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 총수입금액
 불산입 (본 연구의 정의)

마지막으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명세가 기재되어 있거나 당해 과세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표본에서 제외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표본의 수집기준은 <별표 4-6>과 같다.

〈별표 4-5〉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연도	기부금공제 (①)	필요 경비 산입(②)	합계 (③=①+②)	확정신고 인원(④)	비율 (③÷④)
2007년	468,565	31,789	500,354	2,736,478	18.3%
2008년	529,352	27,807	557,159	3,074,419	18.1%
2009년	566,887	28,044	594,931	3,584,432	16.6%
2010년	617,091	26,878	643,969	3,570,816	18.0%
계	2,181,895	114,518	2,296,413	12,966,145	17.7%

〈별표 4-6〉 연구표본의 수집기준

- ①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의 대상자 제외
- ② 간편장부대상자 제외
- ③ 추계신고자 및 성실납세방식 신고자 제외
- ④ 신규사업자 제외
- ⑤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 제외
- ⑥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외
- ⑦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의 겸업사업자 제외
- ⑧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사업자 제외
- ⑨ 결손금, 이월결손금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제외

제3절 연구모형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 (7)의 OLS(ordinary least square) 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RATIO}_i = \beta_0 + \beta_1 * \text{ETA}_i + \beta_2 * \text{ROA}_i + \beta_3 * \text{LEV}_i + \beta_4 * \text{LNTA}_i + \beta_5 * \text{DA}_i + \sum_k \beta_k * \text{IND}_i + \varepsilon_i \quad \dots\dots\dots (7)$$

여기서, RATIO_i : i 번째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ETA_i : i 번째 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 했으면 0

ROA_i : i 번째 사업자의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 ÷ 총자산)

LEV_i : i 번째 사업자의 부채비율(부채 ÷ 총자산)

LNTA_i : i 번째 사업자의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DA_i :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을 이용한 i 번째 사업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IND_i : i 번째 사업자의 업종⁶⁸⁾

ε_i : 오차항

식(7)의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RATIO)는 첫 번째 연구가설에서 검정하려는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ETA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회귀계수인 β_1 의 값이 유의적인 음(-)의 값인 경우에는 <연구가설 1>을 기각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오히려 해당 사업자의 세무조정이 세법에 충실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하

68)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에 기재된 6자리의 주업종 코드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로 구분한 중분류 수준에서 업종을 구분하였다.

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ROA는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하에서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유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다양한 조세최소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서 수익성을 통제시키기 위해 채택하였다.

다음 통제변수인 LEV는 해당 사업의 자본구조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를⁶⁹⁾ 제외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다음 통제변수인 LNTA는 규모의 효과(size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하였다.⁷⁰⁾

마지막 통제변수인 DA는 식(8)과 같이 설정한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의 잔차항(residual)으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과 함께 비정상적인 과세소득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⁷¹⁾ 채택한 설명변수인 점을 고

69)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

70) 주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조세부담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중 조세비용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이다(Zimmerman, 1983). 이에 대한 반대가설은 대규모 기업일수록 로비 등을 통해 조세법령의 입법과정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조세최소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으며, 계열기업을 통해 이익을 이전시킬 수도 있으므로 조세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Porcano, 1986).

71) 홍순복과 심호석(1999), 배덕광(2003), 박수원과 이효익(2005), 심충진 등(2006), 임진윤(2006), 전병욱(2009) 등.

려해서 본 연구에서도 채택하였다.

$$\begin{aligned} (TACC_{it} \div TA_{it-1}) = & \alpha_1 * (1 \div TA_{it-1}) + \\ & \alpha_2 * \{(\Delta REV_{it} - \Delta AR_{it}) \div TA_{it-1}\} + \\ & \alpha_3 * (PPE_{it} \div TA_{it-1}) + \varepsilon_{it} \dots\dots\dots (8) \end{aligned}$$

$TACC_{it}$: i 번째 사업자의 t 연도의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⁷²⁾

TA_{it-1} : i 번째 사업자의 $t-1$ 연도의 기말총자산

ΔREV_{it} : i 번째 사업자의 t 연도의 매출액에서 $t-1$ 연도의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

ΔAR_{it} : i 번째 사업자의 t 연도의 매출채권에서 $t-1$ 연도의 매출채권을 차감한 금액

PPE_{it} : i 번째 사업자의 t 연도의 기말감가상각자산

ε_{it} : 오차항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9)의 OLS 모형을 설정했는데, 종속변수에 RATIO 대신 CREDIT을 채택한 것을 제외하면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구성한 것이다.

$$\begin{aligned} CREDIT_i = & \beta_0 + \beta_1 * ETA_i + \beta_2 * ROA_i + \beta_3 * LEV_i + \\ & \beta_4 * LNTA_i + \beta_5 * DA_i + \sum_k \beta_k * IND_i + \varepsilon_i \dots\dots\dots (9) \end{aligned}$$

여기서, $CREDIT_i$: 식(6)으로 측정한 i 번째 사업자의 “조세감면의 적극성” ($0 \leq CREDIT \leq 1$)

72) 종합소득세의 신고관련 서류에 현금흐름표가 없기 때문에 간접법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식(9)에서도 독립변수인 ETA는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회귀계수인 β_1 의 값이 유의적인 음(-)의 값인 경우에는 〈연구가설 2〉를 기각하여 조세감면의 적용을 통해 오히려 해당 사업자의 세무조정이 세법에 충실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4절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별표 4-7〉에서 제시하였다.

〈별표 4-7〉 변수의 기술통계

(n=100)

설명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최대값
RATIO	1.242	0.283	0.697	1.062	1.222	1.442	2.085
CREDIT	0.241	0.163	0.000	0.008	0.173	0.395	1.000
ETA	0.500	0.503	0.000	0.000	0.500	1.000	1.000
ROA	0.049	0.075	0.008	0.026	0.037	0.054	0.874
LEV	0.582	0.207	0.000	0.439	0.605	0.715	0.913
LNTA	19.021	2.237	17.248	18.329	18.867	19.651	21.340
DA	0.003	0.174	-0.612	-0.053	-0.007	0.045	0.744

RATIO: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CREDIT: 조세감면의 적극성

ETA: 외부세무조정을 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 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 ÷ 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 ÷ 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DA: 재량적 발생액

〈별표 4-7〉과 같이 표본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보고이익에 비해 과세소득을 1.242배 정도 높게 신고했는데 동(同) 비율은 최소 0.697배에서 최대 2.085배의 사이에서 분포하였다. RATIO의 평균값인 1.242는 〈별표 2-9〉와 〈별표 2-10〉을 이용해서 전체 외부세무조정 및 자기세무조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1.307⁷³⁾ 및 1.269의⁷⁴⁾ 값과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본 사업자들은 가능한 최대한의 조세감면 중에서 24.1%를 적용했는데 조세감면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CREDIT=0인) 사업자도 있는 반면 최저한세에 해당할 정도로 최대한의 조세감면을 적용한(CREDIT=1인) 사업자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밖에 표본 사업자들의 평균적인 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및 총자산은 각각 4.9%, 58.2% 및 1억 8,232만원(e^{19.021})이고, 재량적 발생액의 평균은 전기말자산의 -0.3%로 0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0과 다르다는 가설에 대하여 계산한 t값은 $0.172(=0.003 \div (0.174 \div 100^{0.5}))$) 회귀분석의 잔차항(residual)으로 정의하는 재량적 발생액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별표 4-8〉에서 제시하였다. 일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실증분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7) 및 식(9)의 연구모형에서 해당변수들 중 하나씩을 제거한 후 같은 분석을 했지만 그 결과는 후술하는 〈별표 4-10〉 및 〈별표 4-11〉과 거의 같았다.

73) 〈별표 2-9〉의 9.33% ÷ 〈별표 2-10〉의 7.14%.

74) 〈별표 2-9〉의 8.26% ÷ 〈별표 2-10〉의 6.51%.

〈별표 4-8〉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100)

구분	CREDIT	ETA	ROA	LEV	LNTA	DA
RATIO	-0.064 (0.13)	0.174 (0.02)	-0.089 (0.16)	0.194 (0.09)	0.052 (0.44)	0.086 (0.35)
CREDIT		-0.262 (0.01)	-0.052 (0.34)	-0.064 (0.45)	0.135 (0.10)	0.000 (0.97)
ETA			0.041 (0.36)	-0.108 (0.29)	-0.063 (0.53)	-0.018 (0.82)
ROA				-0.355 (0.00)	-0.126 (0.01)	0.138 (0.15)
LEV					0.014 (0.047)	-0.092 (0.24)
LNTA						0.027 (0.76)

RATIO: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CREDIT: 조세감면의 적극성

ETA: 외부세무조정을 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 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 ÷ 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 ÷ 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DA: 재량적 발생액

* 굵은 숫자는 5% 유의수준, 괄호 속의 숫자는 p-value

2. 단일변량분석

〈별표 4-9〉는 외부세무조정 여부에 따른 종속변수인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RATIO)과 조세감면의 정도(CREDIT)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들이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들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높았지만(Z값=1.77), 조세감면의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값=-1.03).

그러나 <별표 4-9>는 외부세무조정 여부로 구분한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RATIO)과 조세감면의 정도(CREDIT)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제한적인 가정하의 분석이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외부세무조정 여부가 두 가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선 연구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다변량분석에서 각각의 연구모형의 회귀계수들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별표 4-9〉 외부세무조정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구분	n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 (RATIO)		조세감면의 정도 (CREDIT)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외부세무조정	50	1.293	0.279	0.225	0.161
자기세무조정	50	1.192	0.288	0.258	0.165
Z값 ⁷⁵⁾			1.77*		-1.03

*는 5% 유의수준 (단측검정)

3. 회귀분석의 결과

먼저,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식(7)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별표 4-10>에서 제시하였다.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OLS 모형의 결과인 <별표 4-10>에서는 외부세무조정 사실(ETA)이 보고이익에 대한

75) Z값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RATIO와 CREDIT 값이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보다 크거나 작다는 가설에 대하여 계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평균이 μ_1, μ_2 인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가 각각 $n_1, \bar{X}, S_1$ 과 $n_2, \bar{Y}, S_2$ 이고 두 표본의 크기가 모두 큰 경우 ($n_1 \geq 30, n_2 \geq 30$)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bar{X} - \bar{Y}) - (\mu_1 - \mu_2)\} \div \sqrt{(\frac{S_1^2}{n_1} + \frac{S_2^2}{n_2})} \sim N(0, 1)$ 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별표 4-10〉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결정요인

$$\text{RATIO}_i = \beta_0 + \beta_1 * \text{ETA}_i + \beta_2 * \text{ROA}_i + \beta_3 * \text{LEV}_i + \beta_4 * \text{LNTA}_i + \beta_5 * \text{DA}_i + \sum_k \beta_k * \text{IND}_i + \varepsilon_i$$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0.002	0.023	0.09
ETA	0.104	0.048	2.17*
ROA	0.083	0.037	2.21*
LEV	0.061	0.040	1.47
LNTA	-0.008	0.006	-1.26
DA	-0.029	0.042	-0.69
adjusted R ²	0.077		
n	100		

RATIO: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ETA: 외부세무조정을 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 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 ÷ 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 ÷ 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DA: 재량적 발생액

*는 5% 유의수준 (단측검정)

과세소득의 비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켜서 〈연구가설 1〉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조세비용의 최소화가 효율적인 세무계획을 위한 유일한 고려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자기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이익을 바탕으로 한 세무조정의 결과 조세비용의 근거인 과세소득을 의도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반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세무사가 고객확보 등을 위해 세무조정에 대한 전문가적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해당 사업자의 의도를 더욱 뒷받침하여 조세회피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당초의 취지와 같이 세무사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조세회피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연구가설의 설명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차이를 통해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했는데, <별표 4-10>의 결과는 이들 중 후자의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동(同) 제도의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별표 4-10>에서는 이 밖에 통제변수 중에서 부채비율(LEV), 기업규모(LNTA) 및 재량적 발생액(DA)은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산수익률(ROA)은 동(同) 비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하에서 소득세 부담액을 절감하기 위해 조세최소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상반된 것인데, 자산수익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매출액순이익률이 증가할수록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배덕광(2003)에 의하면 동(同) 결과는 <별표 4-1>과 같이 비록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일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과세소득을 비교적 높게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식(9)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별표 4-11>에서 제시하였다.

〈별표 4-11〉 조세감면의 정도의 결정요인

$$\text{RATIO}_i = \beta_0 + \beta_1 * \text{ETA}_i + \beta_2 * \text{ROA}_i + \beta_3 * \text{LEV}_i + \beta_4 * \text{LNTA}_i + \beta_5 * \text{DA}_i + \sum_k \beta_k * \text{IND}_i + \varepsilon_i$$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0.002	0.023	0.09
ETA	0.104	0.048	2.17*
ROA	0.083	0.037	2.21*
LEV	0.061	0.040	1.47
LNTA	-0.008	0.006	-1.26
DA	-0.029	0.042	-0.69
adjusted R ²	0.077		
n	100		

CREDIT: 조세감면의 정도

ETA: 외부세무조정을 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 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DA: 재량적 발생액

*는 5% 유의수준 (단측검정)

조세감면의 정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OLS 모형의 결과인 〈별표 4-11〉에서는 외부세무조정 사실(ETA)이 조세감면의 정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켜서 〈연구가설 2〉를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감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 간의 조세회피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연구가설 1〉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자기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을 통해 조세비용을 의도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반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세무사가 고객 확보 등을 위해 조세감면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적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해당 사업

자의 의도를 더욱 뒷받침하여 조세회피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당초의 취지와 같이 세무사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감면의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조세회피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연구가설의 설명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저한세 제도 하에서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의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별도의 측정치(CREDIT)를 통해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조세감면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했는데, <별표 4-11>의 결과는 이들 중 후자의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동(同) 제도의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일관된 실증분석의 결과는 동(同)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별표 4-11>에서는 이 밖에 통제변수 중에서 자산수익률(ROA), 기업규모(LNTA) 및 재량적 발생액(DA)은 조세감면의 정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채비율(LEV)은 동(同) 비율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과세소득을 상대적으로 낮춘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의도했던 종합소득세 부담세액 간의 격차가 작아져서 조세감면의 적용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4. 실증분석의 소결론

이번 절에서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와 관련한 앞선 장의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에 추가하여 동(同) 서비스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여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사의 전문가적 통제를 바탕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에 기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신고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조세감면의 정도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해당 사업자 및 세무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부실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는 동(同)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타당하지 않고, 동(同)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선 장과 이번 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외부세무조정서비스는 전문가적 지식과 통제를 바탕으로 세금의 계산과 신고납부를 대리함으로써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 외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세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함께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해당 사업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성실납세 및 재정수입에 공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同)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비판적 접근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모색하기로 한다.

제5장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의 강화

제2장의 분석과 같이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사업자의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열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인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동 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보다 하위법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됨으로 인해 동(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인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법률과 다르게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신속적 운영에는 장점이 있지만 동(同) 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6. 23.자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와 같이 내부적인 세금계산행위에 불과한 세무조정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행정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하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중대하게 제한함으로써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선 장에서의 경제학적 분석 등

은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⁷⁶⁾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한 입증과 대응과 관계없이 동(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을 법률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법령을 법률로 강화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동(同)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지만 적어도 대법원의 위헌명령심판만으로⁷⁷⁾ 위헌성 여부가 결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비해 법원의 제청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⁷⁸⁾ 의해 위헌성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로 동(同)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6)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와 조성훈(2008)의 비판 및 이에 대한 본 연구 등의 분석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이 동(同) 비판의 근거가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5-1〉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와 조성훈(2008)의 비판 및 동(同) 비판에 대한 본 연구 등의 분석

구분	비판	분석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	행정입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위임입법의 한계를 불일탈, 비례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김웅희·최숙, 2009)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강제로 납세의무 이행에 중대한 제한	신고납세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을 제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 차별을 한다고 볼 수 없음(김웅희·최숙, 2009)
조성훈(2008)	부당한 지출을 강요해서 납세자를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	
	신고성실성을 제고하지 않고 오히려 부실신고를 유도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성실납세에 공헌하는 것으로 확인됨

77) 헌법 제107조 제2항.

78) 헌법 제107조 제1항.

또한, 동(同)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자기책임에 근거한 신고납부제도, 납세협력비용 부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同) 제도가 다수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및 확대

앞선 장에서 분석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의 강화와 함께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하부구조인 외부세무조정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재를 공급하고 외부성을 내재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경제적 역할인 점을 고려하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생산량을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조세지원은 외부세무조정비용의 세액공제이지만 세액공제의 신설은 조세감면의 총액과 함께 항목수를 규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

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지원취지와 가장 유사한 세액공제는 기장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은 <별표 2-3>의 수입금액기준 등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간편장부⁷⁹⁾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식(10)과 같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⁸⁰⁾ 규정하였다.

$$\text{기장세액공제액} = \text{MIN}(\{\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text{사업소득금액} \div \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100\text{만원}\}) \dots\dots\dots (10)$$

<별표 2-3> 및 <별표 2-4>와 같이 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비해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이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금액기준 사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예컨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는 기장내용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 및 외부성의 내재화와 함께 성실신고 및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79) '간편장부'는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8항).

80) 단, ①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②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서는 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식(10)에서 본 연구의 연구표본과 같이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500만원($100\text{만원} \div 20\%$)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하는 1,386만 6,667원의⁸¹⁾ 과세표준까지만 동(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 적용기준은 동(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⁸²⁾ 매우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한도액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한시적 세액공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동(同)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별표 2-4>의 수입금액 기준 등에 의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제도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선 절의 기장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켰는데, 앞선 장에서 분석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증가하도록 하는(즉, 동(同) 서비스로 인한 편익을 사적 한계편익에서 사회적 한계편익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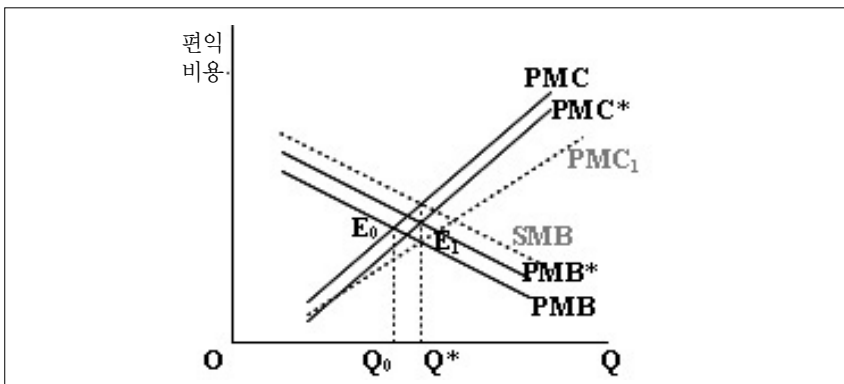
81) $(1,200\text{만원} \times 6\%) + (1,388\text{만 } 6,667\text{원 } 1,200\text{만원}) \times 15\% = 100\text{만원}$

82) 1,386만 6,667원의 과세표준 금액에 <별표 2-9>의 (과세표준 $\div$ 총수입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면 수입금액이 1억 7,355만원($1,386\text{만 } 6,667\text{원} \div 7.99\%$) 내지 2억 3,188만원($1,386\text{만 } 6,667\text{원} \div 5.98\%$)으로 계산되는데, 동(同) 수입금액은 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안은 <별표 2-4>의 수입금액 기준 등을 강화해서 외부세무조정의 대상 사업자를 강제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외부세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은 외부세무조정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서 사적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생산량은 다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동(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서비스로 증가한 세무조정의 품질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적 한계편익이 증가하고 동(同) 서비스의 공급 확대로 인해 사적 한계비용이 감소함으로써 별도의 조세지원이 없더라도 동(同) 서비스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즉, <그림 2-2>를 수정한 <그림 5-1>과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사적한계편익이 PMB에서 PMB*로 증가하고, 사적한계비용이 PMC에서 PMC*로 감소함으로써 자발적 선택에 의한 동(同) 서비스의 생산량이 Q_0 에서 Q^* 로 증가할 때까지는) 외부세무조정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세액공제를 통한 기대효과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사회적 최적수준 생산)



외부세무조정비용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의 항목수를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⁸³⁾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⁸⁴⁾ 감면비율을 신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경우 증가시키는 것을 대체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유리한 적용

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선 절에서 분석한 성실신고 및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효과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전문가적 통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무조사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제척기

83)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나 연구·개발활동 등과 같이 해당 사업자에게 선행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기업규모 및 업종 외에 별도의 조건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84) 제조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별표 5-2>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5-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구분		제조업·건설업 등	도매업 등
소기업*A	수도권	20%	10%
	수도권 외	30%	10%
중기업	수도권	0%*B	0%
	수도권 외	15%	5%

*A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상용 종업원수가 10인(제조업은 100인, 광업 등은 50인) 미만인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B 지식기반사업은 10%

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정되는 과세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의 유형을⁸⁵⁾ 열거하고 있는데, 자발적 선택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후적 세금부담의 위험을 시간적으로 한정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별표 5-3>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정행위의 유형을 외부세무조정 of 경우에만 구분해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곤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지막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동(同) 유형의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도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10%에 비해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

85)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별표 5-3>과 같다.

<별표 5-3>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의 유형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한 행정벌을 매우 가중하고 있는데,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선택에 따른 외부세무조정의 결과 발생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사후적 세금부담의 위험을 금전적으로도 한정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세무사회의 외부세무조정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설문조사를 통한 제3장의 분석에서 Q4(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와 Q14(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조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무사회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의 개별 응답과⁸⁶⁾ 같이 동(同) 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되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의 사익추구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불성실신고가 증가하거나 세무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동(同)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세무조정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무사회의 품질관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무사회의 자체적인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하여 불성실한 외부세무조정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동(同) 서비스에 대한 외부적 비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세무사회의 자체적 노력에 대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사회에서 제정한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은 “세법에

86) 전술한 바와 같이 Q14는 동(同)설문이 파생한 Q13-1(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의 결과와 유사하게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정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同)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약간명의 감리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기에는 활용가능한 자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감리업무의 강화는 동(同)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자발적인 신호제공행위(signalling)로 세무사들을 위임해서 세무사회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감리업무의 강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동(同) 서비스로 인해 편익을 제공받는 과세관청에서도 조세지원의 형태로 동(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시 세무사회의 감리업무 비용을 공제가능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대체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출한 추가적 인건비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지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과 유사하게 동(同) 비용의 일정비율을 세무사회의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즉, 실질적으로는 손금을 중복적으로 인정하는)⁸⁷⁾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하여 감리기한인 당년 8월말까지의⁸⁸⁾ 감리결과 잘못된 신고내용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도⁸⁹⁾ 불구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87) 이와 같이 특정 비용을 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동(同)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결과적으로 동(同)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super-deduction”이라고 한다.

88)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89)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함으로써 감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별표 5-4〉의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4〉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의 기간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감면율	50%	20%	10%

제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일련의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동(同)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후에 당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同)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먼저,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동(同)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同) 서비스가 과세관청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동(同)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도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여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사의 전문가적 통제를 바탕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신고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

소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조세감면의 정도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해당 사업자 및 세무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부실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는 동(同)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타당하지 않고, 동(同)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비판적 접근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지원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법령을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강화함으로써 동(同) 제도의 취약한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한도액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취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이로 인해 증가하는 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비용은 한시적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사한 취지로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문가적 통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사유인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의 감리업무를 통한 동(同)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업무비용에 대한 중복적 손금계상과 함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동(同) 제도의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제

도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분석이 진행된 점에서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래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의 논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웅희 · 최숙, “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조세법연구」 제15권 제2호, 2009.
- 박명호 · 심태섭,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회계저널」 제9권 제4호, 2008.
- 박수원 · 이효익,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2권 제1호, 2005.
- 배덕광,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3.
- 심충진 · 김문현 · 이종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6.
- 심태섭,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세무대리인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6권, 1999.
- 이강오 · 명영준,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 2009.
-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2판, 법문사, 1995.
- ,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 임인환, “세무조정항목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8권, 2002.
- 임진윤,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2006.
- 전병욱,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8권 제6호, 2009.

- 전병욱, “중소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의 적극성의 분석-대기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
- 조성훈,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의 위헌성 검토”, 「국세」 2008년 9월호, 2008.
- 홍순복 · 심호석,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이론과 현실”, 「회계정보연구」 제11권, 1999.
- 홍정화 · 이미영,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1호, 2009.

2. 국외문헌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Review*, 70(2), 1995.
- Porcano, T. Corporate tax rates: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8(1), 1986.
- Zimmerman, J.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11-149, 1983.

3. 기 타

- www.law.go.kr.
- www.nts.go.kr.
- www.samili.com.

부 록

〈설문지〉

아래의 설문은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고,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답변자의 인적사항이나 답변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1)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차이가 없다. ②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③ 큰 차이가 있다.

Q2) 외부세무조정이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제고시키지 않는다. ② 어느 정도 제고시킨다.
③ 크게 제고시킨다.

Q3)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해당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③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Q4) 외부세무조정외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직무상 독립성에 영향을 받아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Q4-1)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훨씬 더 클 것이다.

② 약간 더 클 것이다.

③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을 것이다.

Q4-2)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이전 단계인 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③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Q5)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상사업자의 세법 질서 준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③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Q6) 세무사가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원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이 국가의 재정수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 ③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Q7)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이 궁극적으로 전문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에 조력하는 것보다는 고객확보를 위한 부실 신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 ③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Q8)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이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부당한 지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 ③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Q9) 귀하께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 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③ 큰 영향을 미친다.

Q9-1)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매우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10)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인지의 여부가 선정기준에 묵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②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 ③ 크게 반영되었다.

Q10-1)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선정기준에 반영되는 정도가 현재보다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1) 귀하께서 특정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② 확률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다.
- ③ 확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Q12)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동일 업종의 평균 소득율이나 부가가치를 등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비율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②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다.
- ③ 크게 향상될 것이다.

Q13) 이상의 설문을 종합할 때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제고시키지 않는다. ② 어느 정도 제고시킨다.
- ③ 크게 제고시킨다.

Q13-1) ② 또는 ③으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크게 필요하다.

Q13-2) ② 또는 ③으로 답하신 경우에 시행 가능한 조세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부세무조정비용의 세액공제
- ② 세무조사 선정비율의 축소

③ 기타()

Q14)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제고시키고 이를 조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세무사회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크게 필요하다.

〈통계분류〉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D2)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_____급

D3) 귀하께서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D4) 귀하께서는 현재 또는 과거에 세무조사 업무에 종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종사하고 있다. ② 과거에 종사하였다.
③ 경험이 없다.

D4-1) ① 또는 ②의 경우 세무조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 ⑥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 ⑦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 研究叢書案内

⑧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的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⑨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⑩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鎮 淳 1994. 10

李 哲 松

⑪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⑫ 租稅制裁法制的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⑬ 財産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5. 3

⑭ 納稅者의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2

⑮ 移轉價格稅制와 多國籍企業의 防禦戰略

崔 鏞 善 1996. 3

孫 閏 煥

- [16] 所得稅制度 및 行政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6. 9
- [17] 法人稅 課稅體系의 本質的 改編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6. 10
- [18] 稅務士制度의 課題와 試驗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12
- [19] 個別公示地價의 行政審判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7. 3
- [20] 稅務士의 租稅訴訟代理適格性에 관한 研究
李 哲 松 1997. 12
- [21] 稅務法人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8. 3
- [22] 稅務會計의 定立과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8. 3
- [23] 申告納付稅制의 評價와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徐 熙 烈 1998. 3
- [24] 우리나라 企業會計制度의 改善方向
高 承 禧 1999. 3

■ 研究叢書案内

[25] 企業合併分割의 課稅體系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9. 3

[26] 聯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과 政策課題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0. 3

[27] 納稅環境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0. 3

[28] 프랑스 租稅節次法 研究

安 昌 滿 2001. 1

[29] 稅效果會計論 研究

高 承 禧 2001. 3

[30] 오스트리아 稅務士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3

李 鍾 永

[31] 리스會計와 리스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1. 3

[32] 派生商品關聯去來의 課稅에 관한 研究

玉 武 錫 2001. 4

[33] 推計課稅方法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4

34 附加價值稅 改編方案 研究

安 昌 湍 2002. 3

35 營業權(企業價值)의 會計와 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2. 3

36 負擔金 관련 行政審判代理業務의 擔當主體에 관한 研究

金 相 憲 2002. 3

37 企業年金의 會計와 稅務

高 承 禧 2002. 3

38 不動産 관련 地方稅制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3. 3

39 綠色申告 納稅制度 導入에 관한 研究

稅務士制度改善推進委員會 2003. 3

綠色申告制度研究委員會

40 電子商去來時代に 對應한 課稅體系整備와 稅務서비스 改善

李 在 奎 2003. 3

皇甫 烈

41 稅務서비스 市場開放에 대한 稅務代理業界의 對應

高 俊 誠 2003. 3

42 稅法상 企業會計 準用 規定의 問題点과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法人稅法 第43條의 立法的 誤謬와 改編方案을 中心으로)

李 愚 澤 2003. 11

■ 研究叢書案内

[43] 納稅組合의 效率的 管理改善 方案

金 雄 熙 2005. 3

李 基 煜

[44] 租稅法令 解釋情報의 體系的 生産 및 傳達 方案

李 基 煜 2005. 7

金 雄 熙

[45] 新經濟時代 우리나라 株式評價 및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李 愚 澤 2008. 7

金 完 鎰

[46] EITC(勤勞獎勵稅制)導入의 先決課題에 관한 研究

俞 景 文 2008. 7

[47] 租稅法の 憲法合致的 立法論에 관한 研究

李 銓 午 2008. 8

[48] 賣買事例價額의 時價適用 및 이에 따른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朴 孔 卓 2008. 8

[49] 우리나라 記帳擴大方案 研究

朴 性 培 2008. 8

[50] 租稅行政審判前置制度에 관한 研究

蔡 羽 爽 2008. 8

[51]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安 昌 湍 2009. 1

- [52] 조세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사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徐 熙 烈 2009. 1

- [53]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金 淀 植 2009. 1

朴 薰

- [54]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金 完 石 2009. 3

- [55] 현대 조세환경에 위배되는 세무대리·세무대리인·
납세협력비 등 언어의 폐해와 개선방안

李 愚 澤 2009. 10

- [56]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심 태 섭 2010. 3

김 상 철

서 희 열

- [57]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 윤 성 2010. 4

이 은 자

이 명 근

- [58]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

정 지 선 2010. 4

장 근 호

■ 研究叢書案内

[59]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정 식 2010. 4

서 희 열

[60] 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 석 남 2011. 3

심 충 진

[61]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정 지 선 2011. 3

권 오 현

[6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오 기 수 2011. 3

손 장 엽

**[63]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입(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 · 개선에 관한 연구**

전 병 욱 2011. 3

최 보 람

[64] 실질과세원칙에서의 다단계거래 부인에 관한 연구

최 성 근 2012. 3

주 혜 진

[65]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 완 석 2012. 3

전 병 욱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⑤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 研究調查資料案内

〔6〕 獨逸の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7〕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8〕 日本の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9〕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10〕 獨逸稅務士法

崔 竣 璿 1996. 3

李 承 文

〔11〕 美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朴 胤 浚 1997. 2

〔12〕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金 光 洙 1998. 3

〔13〕 獨逸法人稅法

金 光 洙 1999. 2

〔14〕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研 究 報 告 書
第 65輯 (2012. 3)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2年 3月 15日 印刷

2012年 3月 18日 發行

著 者 김완석 · 전병욱

發行人 韓國租稅研究所

發行處 韓國稅務士會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 : 1988年 11月 11日 (바 1184)

ISBN 979-11-5520-006-3

〈非賣品〉